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항 만 시 설 관 리 권 등 록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항만시설관리권등록령의 하위 행정규칙으로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업무 처리지침’(해양수산부 고시)를 두고 있으나 그 조문 수가 많지 않고 등록령과 중복된 규정이 많아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현재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을 등록령에 상향 입법하고, 현 행정여건에 맞지 않는 규정과 어려운 한자어 등을 집행가능성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대상시설 규정(안 제1조의2)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대상시설을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로서 국가 또는 시·도 귀속 항만시설 및 국가 또는 시·도 비귀속 항만시설 중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대상 외의 시설로 하고, 등록신청시기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준공확인 후로 정함

나.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 및 등록처리자 변경(안 제8조 및 제10조)

항만시설관리권 사무처리주체를 국가관리항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지방관리항만은 시·도지사라고 하고, 등록사무처리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지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사

람이 처리토록 변경함

다.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 추가(안 제21조)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자에 기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를 받은 자 외에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를 추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의견조회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심사 예정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대상시설) ①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등록대상시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 중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항만시설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 중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대상 외의 시설로 한다.

②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 증명서를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제2조 전단 중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를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소에 대하여는”을 “소는”으로 한다.

제6조 중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경우 관리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8조 중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세부 작성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성명을 적고 해양수산부장관의”를 “관리청의 직위·성명을 적고”로,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을 “간인(間印)”으로 한다.

제11조 중 “비치한다”를 “갖추어둔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존하여야”를 각각 “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산한다”를 “계산한다”로 한다.

제13조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로 한다.

제14조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고시하여야”를 “고시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 등록의”를 “따른 등록의”로, “의한 등록절차”를 “따른 등록절차”로 한다.

제17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9조제3호 중 “포기에 의한”을 “포기로 인한”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등록에 관하여는”을 “등록은”으로 한다.

제21조 중 “자가 하여야”를 “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해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촉탁하여야”를 “촉탁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23조 중 “촉탁하여야”를 “촉탁해야”로 한다.

제24조 중 “가처분명령”을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으로 한다.

제25조 중 “촉탁하여야”를 “촉탁해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록원인”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을 “가족관계등록사항”으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한다.

5.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제32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에 따른 등록 시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명날인하여야”를 “서명날인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항만시설관리권”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관리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이 영에서 정하는”을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으로 한다.

제29조 전단 중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30조 중 “부본을 제출하여야”를 “부본(副本)을 제출해야”로 한다.

제31조 중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

제32조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3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제34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하하여야”를 “각하해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각하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하거”를 “않거”로, “아니한”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등록하여야”를 “등록해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전등록의 순위번호”를 “멸실되기 전 등록의 순위번호”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편철하여야”를 “편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편철하였”을 “편철했”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교부하여야”를 “교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아니하는”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가철하고”를 “덧붙여 철하고”로,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가철하는”을 “덧붙여 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사하여야”를 “복사해야”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일부를을”을 “일부를 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부기하여야”를 “부기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하여 그”를 “그”로, “부기하여야”를 “부기해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인하여”를 “인해”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인하여”를 “인해”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인하여”를 “인해”로, “폐쇄하여야”를 “폐쇄해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를 “변제기(辨濟期), 이자의 발생기(發生期)”로, “원본”을 “원본(元本)”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최고액”을 “최고액(最高額)”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표시하여야”를 “표시해야”로 한다.

제62조 중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을 “따라 각 항만시설관리권에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63조 중 “관하여 등록한”을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으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관하여 제65조”를 “제65조”로 한다.

제69조 중 “촉탁하여야”를 “촉탁해야”로 한다.

제70조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71조 중 “말소하여야”를 “말소해야”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74조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75조 중 “말소하여야”를 “말소해야”로 한다.

제7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할”을 “관리청을 거쳐 관할”로 한다.

제77조의 제목 “(이의절차 등)”을 “(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8조제1항 중 “송부하여야”를 “송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취하여야”를 “취해야”로 한다.

제80조제1항 전단 중 “하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하
여”를 “대해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항만
시설관리권 등록령」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
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권과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장권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제1조(목적) ----- ----- ----- ----- <u>필요한</u> ----- -----. <u>제1조의2(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 대상시설) ①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관리권(이하 “항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의 등록대상시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이 설치한 항만시설 중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는 항만시설과 국가 또는 시·도에 귀속되지 않는 항만시설 중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대상 외의 시설로 한다.</u> <u>②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다.</u>
제2조(가등록) 가등록(假登錄)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	제2조(가등록) ----- <u>항만시설관리권</u>-----

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향만시설관리권(이하 “향만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향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예고등록) 예고등록(豫告登
錄)은 등록원인의 무효 또는 취
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나 회복
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
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
한 소에 대하여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
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기간을 정하여 등록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해양수산
부장은 항만시설관리권에 대

----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
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
-----.

제3조(예고등록) -----

-----.

소는 -----

-----.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

----- 경우 관리청 -----

-----.

제7조(등록완료의 통지) 관리청--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항만시설관리권 등록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1. ~ 3. (생략)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등록사무
는 해양수산부에 근무하는 서기
관 또는 행정사무관 중에서 해
양수산부장관이 지정 한 자(이하
“등록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
한다.

제9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①
~ ④ (생략)

⑤ 갑구 사항란에는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장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후단 신설>

⑥ (생략)

제10조(등록부의 간인) 등록부에는 그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성명을 적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을 찍은 후 편철한 각 장 사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의 직인으로 간인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
 --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리청

 ---.

제9조(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이 경우 세부 작성사
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등록부의 간인) -----

관리청의 직위·성명을 적고 -

간인(間印)-----
-----.

제11조(신청서편철부)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된 경우에는 신청서편철부를 비치 한다.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제4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등록부의 멸실)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제11조(신청서편철부) -----

----- 갖추
어둔다.

제12조(등록부의 보존) ① -----
----- 보존해야 -----
-----.

② -----

보존해야 -----.

----- 계산한다.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

----- 수수료
를 내지 않는다.

제14조(등록부의 멸실) -----

----- 관리청-----

자는 그 등록부에서의 종전 순위 위를 보유한다는 뜻을 <u>고시</u>하 <u>여</u>야 한다.	----- ----- <u>고시</u>하 -----.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생 략)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u>보존</u>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부의 폐쇄) ① (현행 과 같음) ② ----- ----- <u>보존</u>하야 -----.
제16조(신청) 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囑託) 또는 당사자의 신청 에 <u>의하여</u> 행한다. ② 촉탁에 <u>의한</u>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u>의한</u> 등록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신청) ① ----- ----- ----- -- <u>따라</u> -----. ② ----- <u>따른</u> 등록의 ----- ----- <u>따른</u> 등록절차 ----- -----.
제17조(등록신청인) 등록의 신청 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 는 그 대리인이 <u>하</u>여야 한다.	제17조(등록신청인) ----- ----- ----- <u>하</u>야 -----.
제19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 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2. (생략) 3. 권리의 <u>포기</u>에 <u>의한</u> 말소 4. 5. (생략)	제19조(등록명의인의 등록신청) - ----- ----- -----.
제20조(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	제20조(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신청) ① ----- ----- -----.
1. 2. (생략) 3. 권리의 <u>포기</u>에 <u>의한</u> 말소 4. 5.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 <u>포기</u>로 인한 --- 4. 5. (현행과 같음)
제20조(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신청) ① 종중, 문중, 그 밖	제20조(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록신청) ① ----- ----- -----.

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생략)

제21조(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을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6조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44조제1항을 준용한다.

----- 등록은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항만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

---- 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항만공사가 해야 -----
-----.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① -----

-- 촉탁해야 ----.

② ----- 관한 사항은 -----

-----.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관공서의 공매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4조(가등록) 가등록은 신청서에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가등록권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예고등록) 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訴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신청서류) ①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 4. (생략)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

----- 촉탁해야
-----.

제24조(가등록) -----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

제25조(예고등록) -----

----- 촉탁해야
-----.

제26조(등록신청서류) ① -----

----- 첨부해야 ----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원인----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2. (생략)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2. (생략)

5. 그 밖에 제3항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제32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따른 등록 시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등 이 영에서 정하는 서류

② (현행과 같음)

③ ----- 가
----- 가족관계등록사항-----

첨부해야 ----. -----

----- 관리청-----

----- 확인
해야 ----.

1. 2. (현행과 같음)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

----- 서명날인해야 ----
--.

1. 2. (현행과 같음)

3. <u>항만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u>	3. <u>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관리권</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항만시설관리권에 의하여</u>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5. <u>해양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항만시설관리권으로</u>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u>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u>	10. ----- <u>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등에 따라 신청서에 적어야 하는</u> ----- --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등록권리자가 <u>2인</u>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적어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경우에도 그 뜻을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 <u>2명</u> ----- ----- -----. ----- -----.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u>부분을 제출하여야</u> 한다.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 ----- ----- <u>부분(副本)을 제출해야</u> ----- -----.
제31조(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증명서가 멸실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적어 제출	제31조(등록증명서 멸실의 경우) ----- ----- -----

하고, 등록공무원은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신청서의 접수)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서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후단 신설>

----- 등록해야 ----.

제3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

----- 첨부해야 ----.

제33조(신청서의 접수) ① -----

----. 이 경우, 하나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

② (생략) 제34조(등록의 순서) 등록공무원 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 록을 <u>하여야</u> 한다. 제35조(신청의 각하) 등록공무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을 <u>각하하여야</u> 한 다. 다만, 신청의 결함이 보정 (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 청인이 1근무일 이내에 이를 보 정한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u> <u>다</u>. 1. 2. (생략) 3. 신청서에 적은 항만시설관리 권 또는 저장권의 표시가 등 록부와 일치하지 <u>아니한</u> 경우 4. 신청서에 적은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u>아</u> <u>니하거나</u> 신청인이 등록명의 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 부와 일치하지 <u>아니한</u> 경우 5. 신청서에 적은 사항이 등록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일치 하지 <u>아니한</u> 경우	<u>은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등록의 순서) ----- ----- --- <u>해야</u> -----. 제35조(신청의 각하) ----- ----- ----- <u>각하해야</u> ---- -- . ----- ----- ----- ----- <u>각하하지 않을 수</u> <u>있다.</u> 1. 2. (현행과 같음) 3. ----- ----- ----- <u>않은</u> ----- 4. ----- ----- <u>않</u> <u>거</u>----- ----- ----- <u>않는</u> ----- 5. ----- ----- -- <u>않은</u> -----
--	--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u>아니한</u> 경우 제36조(등록의 기재사항) ①·② (생략) ③ 제32조에 따른 신청에 <u>의하여</u>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제42조(등록증명서의 교부) 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따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분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적은 후 <u>해양수산부장관</u>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③ (생략) 제44조(경정등록)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알리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으	6. ----- ----- <u>않은</u> ----- 제36조(등록의 기재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따라</u> ----- ----- ----- ----- ----- -----. 제42조(등록증명서의 교부) ① ----- ----- ----- ----- ----- ----- <u>관리청</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4조(경정등록) ① ----- ----- ----- ----- ----- ----- -----
--	--

면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제45조(회복등록) 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회복등록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회복의 뜻을 적고, 말소된 등록과 같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46조(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전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전등록의 등

-- 관리청-----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회복등록) ① -----

----- 첨부해야 -----
--.

② -----

----- 해야 -----

----- 등록해야 -----
-----.

제46조(멸실된 등록부의 회복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멸실되기 전
등록의 순위번호-----

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 중에 접수한 새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이 있는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48조(편철증명서) ① 등록공무

원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마친 경우에는 제42조를 준용하여 편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등록증명서의 교부) ① 제4

9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등록증명서를 교부한다는 뜻을 알리고, 회복한 등록과 같은 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 첨부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 ①

----- 편철해야 -----.

② ----- 편철했-----

-----.

제48조(편철증명서) ① -----

----- 교부해야 -----.

② ----- 첨부
해야 -----

-----.

제50조(등록증명서의 교부) ① --

----- 않은 -----

경우에는 동시에 그 뜻도 알려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록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1조(새 등록용지에의 기재) ① 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갑·을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용지를 가철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갑·을구의 제2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 등록을 옮겨 적거나 복사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 있는 등록만을 옮겨 적거나 복사하여야 한다.

제53조(일부분할의 등록) ① 갑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항만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

-----.

② -----

----- 첨부
해야 ----.

③ (현행과 같음)

제51조(새 등록용지에의 기재) ① -----

----- 덧붙여 철
하고-----
----- 표시해야 -----.
----- 덧붙여 철하는 ----
-----.

② -----

----- 복사해야 ----
----.

제53조(일부분할의 등록) ① ----

일부를 을 -----

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어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장권에 관한 등록을 복사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된다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⑤ 신청서에 저장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54조(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저장권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부기해야 -----
--.

⑤ -----
----- 그 -----

----- 부기해야 -----
-----.

제54조(저당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분할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에 관한 등록에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생략)

제55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56조(합병의 등록) ① (생략)

②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고,

----- 인
해 -----

-----.

③ (현행과 같음)

제55조(항만시설관리권의 일부를 분리하여 합병하는 경우의 합병의 등록) ① -----

----- 인해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합병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인해 -----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및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58조(등록신청) 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과 채무자를 적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적으며,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경우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뜻과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제61조(공동담보 등) ①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항만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

----- 폐쇄해
야 ----.

제58조(등록신청) ① -----

----- 변제기(辨濟期),
이자의 발생기(發生期) -----
----- 원본(元
本) -----

-----.

② -----

----- 최고액(最高額)
-----.

제61조(공동담보 등) ① -----

----- 표시해야 -----

다.

② (생략)

제62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제61조제1항에 다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3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때에는 그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기재한 다른 항만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제6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여러 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소멸

--.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공동담보등록의 기재) --
----- 따라 각 항만시설관리권에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

-----.

제63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

---- 공동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

제66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

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른 항만시설관리권에 관하여 제65조에 따라 하는 등록에 그 뜻을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항만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한 경우에도 같다.

제69조(예고등록의 말소)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 소의 취하서,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해양수산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70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

----- 제65조-----

제69조(예고등록의 말소) -----

-- 촉탁해야 ----.

제70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

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채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73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마친 후 그 등록이 제35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異議)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 첨부해야 ----
----.

제71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

말소해야 ----.

제73조(위반등록이 있는 경우의 말소의 통지) ① -----

----- 않은

-----.

② -----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에 1회 이상 <u>공고하여야</u> 한다. 제74조(말소에 관한 이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 으면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u>하여야</u> 한다. 제75조(직권말소) 제73조 및 제74 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이의를 각하한 경우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 로 등록을 <u>말소하여야</u> 한다. 제76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록 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 의가 있는 자는 <u>관할</u> 지방법원 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7조(<u>이의절차</u> 등) ① <u>이의의</u> <u>신청을 하려면 해양수산부에 이</u> <u>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u> 한다. ② (생 략) 제78조(이의에 대한 조치) ① 등 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의 견을 붙여 사건을 관할 지방법 원에 <u>송부하여야</u> 한다. ② 등록공무원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에	----- ----- <u>공고해야</u> -----. 제74조(말소에 관한 이의) ----- ----- ----- ----- <u>해야</u> -----. 제75조(직권말소) ----- ----- ----- ----- <u>말소해야</u> -----. 제76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 ----- <u>관리청을 거쳐</u> <u>관할</u> -----. 제77조(<u>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u> <u>의 금지</u>) <삭 제>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8조(이의에 대한 조치) ① --- ----- ----- ----- --- <u>송부해야</u> -----. ② ----- -----
--	---

해당하는 처분을 <u>하여야</u> 한다. 다만, 등록이 끝난 후일 때에는 그 등록에 이의신청이 있다는 뜻을 부기한 후 이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제1항 의 절차를 <u>취하여야</u> 한다. 제80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 하여 이유를 붙여 결정을 <u>하여야</u> <u>한다</u>.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등록공무원에 게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도 록 명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 과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알 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u>대하여</u>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 고할 수 있다.	----- <u>해야</u> -----. ----- ----- ----- ----- ----- <u>취해야</u> -----. 제80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 ----- <u>해야</u> - -----. ----- ----- ----- ----- -----. ② ----- <u>대해서</u>----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920